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환경부 대기관리과 자료 제공

1. 개정이유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적산전력계 부착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유해물질이 다량 발생하는 신규 산업시설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추가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을 유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등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산전력계 부착기준 완화(안 별표 1의2 제2호)

(1) 방지시설의 사용전압 및 전력 인출지점 등이 다른 경우 모든 전력을 적산하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비가 과도하게 소요

(2) 방지시설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부대시설에 적산전력계를 개별적으로 부착하고 합산할 수 있도록 함

(3) 시설투자비 감소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

나.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 및 부착기준 조정(안 별표 2 제1호)

(1) 고회전율제품(RPF, RDF) 전용시설 및 반도체 제조시설의 증착(蒸着)·식각(蝕刻)시설 등이 새로운 배출시설로 규정됨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신규 산업시설을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추가하고 일부시설에 대하여 부착기준 조정이 필요함.

(2) 신규 산업시설 중 유해물질 발생량이 많은 시설에 대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규정을 신설하고, 탈사시설에 부착기준을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3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에서 40,000



포장과 법률

표준입방미터로 상향 조정

(3)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기준, 부착항목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굴뚝원격감시체계 운영의 안정화 기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 중 “다만, 배출시설의 전력사용량이 방지시설 전력사용량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산할 수 있다.”를 “다만, 방지시설외의 전력사용량이 방지시설 전력사용량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산할 수 있으며, 방지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원설비가 달라 모든 전력을 적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요 부대시설에 개별적으로 적산전력계를 설치하여 합산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가.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1) 전기아크로(아크로에 한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시설 (2) 소결로(燒結爐)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시설 (3) 가열로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시설 (4) 용광로, 용선로, 전로, 용융·용해로 및 배소로(焙燒爐)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용선로 및 배소로에 한한다)
나.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1) 산처리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에 한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시설 (2) 주물사(鑄物砂)처리시설(연속식에 한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시설	염화수소 먼지
다.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1) 증착시설 및 식각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에 한한다)	염화수소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항목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시설	
라. 화합물 또는 화학제품제조시설 (1) 황산제조시설(황연소, 비철금속제련, 중질유분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시설 (2) 황산을 제외한 무기산 제조시설 (가) 인산제조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시설 (나) 불산(弗酸)제조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시설 (다) 염산제조 또는 염산화수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시설 (라) 질산제조 또는 질산화수재생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시설 (3) 화학비료제조시설 (가) 질소질비료(요소를 포함한다)제조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시설 (나) 복합비료제조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시설 (4) 인광석 소성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시설 (5) 카바이트제조 전기로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시설 (6) 용융·소성시설 및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시설	황산화물 불화수소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먼지, 암모니아 먼지, 암모니아, 불화수소 먼지, 불화수소, 질소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마. 석유정제품(석유화학제품을 포함한다)제조시설 (1) 가열시설 - 가열용량이 시간당 2,476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2) 촉매재생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시설 (3) 탈황 또는 황회수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황산화물



포장과 법률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항목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시설 (4)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 황산 또는 황회수시설을 제외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바. 코크스 또는 관련제품 제조시설 - 코크스 제조시설 중 황회수 제조시설을 제외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시설 사.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1) 시멘트제조시설의 소성로 및 냉각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시설 (2) 석회 소성로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3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시설 (3) 석고 소성·건조로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시설 (4) 유리(유리섬유를 포함한다) 제조 용융·용해시설 - 포트(pot)로가 아닌 시설로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시설 (5) 광물섬유제조 용융로 및 기타 비금속광물 소성·용융·용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시설 (6) 산처리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에 한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소성로에 한한다), 염화수소(소성로에 한한다) 먼지, 질소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염화수소
아. 공통시설 중 발전시설 (1) 기력발전시설 (가) 액체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 또는 시간당 증발량이 40톤 이상인 열병합발전시설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 또는 시간당 증발량이 40톤 이상인 열병합발전시설 (2) 복합화력발전시설 (가) 액체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 또는 시간당 증발량이 40톤 이상인 열병합발전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부차대상 배출시설	측 정 항 목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 또는 시간당 증발량이 40톤 이상인 열병합발전시설 (3) 내연발전시설 (가) 액체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 발전용량 5,000킬로와트 이상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 발전용량 5,000킬로와트 이상	질소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자. 공통시설 중 보일러 - 액체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로서 시간당 증발량이 40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이 2,476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나무를 연료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차. 공통시설중 소각시설(소각 보일러를 포함한다) (1)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폐기물처리업 포함) - 소각용량이 시간당 0.4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소각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3) 폐가스 소각시설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시설 (4)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5) 고형연료제품(RDF, RPF) 전용시설 - 소각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전용시설 (6) 폐수 소각시설 -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카. 그 밖의 시설 (1)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연속식에 한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4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시설 (2) 증발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시설 (3) 기타 업종의 가열시설 및 건조시설 - 시간당 가열용량이 2,476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먼지 먼지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별표 2]

1.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측정항목

<비 고> : 1.부착대상시설의 용량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필증의 방지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배출구별로 산정한다(다만, 방지시설용량은 표준상태로 환산한 값을 적용하며 동일배출시설에 2개 이상의 배출구를 설치한 경우는 배출구별 방지시설 용량을 합산하여 부착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2. 동일사업장에 부착대상시설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중간자료수집기(FEP)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배출구 온도 및 최종연소실출구 온도를 각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연소실출구 온도측정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부착한 온도측정기로 갈음 할 수 있다.

4. 표준산소농도가 적용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산소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5. 부착대상 배출시설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증착·식각시설 및 산처리시설의 “연속식”이라 함은 연속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구조로서 시설의 가동시간이 1일 8시간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나. 주물사처리시설·탈사시설·탈청시설의 “연속식”이라 함은 연속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구조로서 시설의 가동시간이 1일 8시간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다. 폐가스 소각시설 중 청정연료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처리대상 가스를 연소원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라. 증발시설 중 진공증발시설 및 배출가스를 회수하여 응축하는 시설은 부착대상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운영 중인 배출시설로서 별표 2 제1호 다목, 사목(1)(측정항목중 염화수소에 한한다), 사목(6)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경우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그 이외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7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착기한 만료일 6개월 이전에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측정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사유
<p>[별표 1의2] 1. (생략) 2. 적산전력계 부착방법 방지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전 력을.....부착하 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전력사용량이 방지시설 전력사용량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산 하여 적산할 수 있다.</p>	<p>[별표 1의2] 1. (현행과 같음) 2. 적산전력계 부착방법 방지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전 력을.....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방지시설외의 전력사용량이 방지시설 전력사용 량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산할 수 있으며, 방지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원설비가 달라 모든 전력 을 적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요 부대시설에 개별적으로 적산전력계를 설치하여 합산할 수 있다.</p>	<p>○ 방지시설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부대시설에 적 산전력계를 개별적으로 부착 하고 합산할 수 있도록 완화 함</p> <p>○ 반도체 제조시설 등 신규 산업시설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추가, 일부시설 부 착기준 및 부착항목 조정(현 행 별표 2를 전면개정하여 개 정안 별표 2로 만들)</p>
<p>[별표 2] 1.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측정항목</p> <p>* 현행 별표 2 제1호를 첨부 1. 로 별첨</p>	<p>[별표 2] 1.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측정항목</p> <p>* 개정안 별표 2 제1호를 첨부 2. 로 별첨</p>	

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부착을
유예한다. 이 경우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배출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를 부착하여야 한다. ☞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